2026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

금번 기말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, 이유를 막론하고 **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**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부정행위의 유형(대면, 비대면 시험 공통 적용)

1.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
2. 노트나 교재, 메모,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
3.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
4.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
5.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
6. 책상,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
7.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
8.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
9.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
10.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
11. 교수자의 허가없이 생성형 인공지능(Chat GPT 등)을 활용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
12. 교수자의 허가없이 통신, 녹음, 영상 촬영, 정보전송 등의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자. 단, 보청기 등 의료목적 기기는 교수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시험 중에 착용할 수 있다.
13. 기타 부정행위

(비대면 시험 시 주의사항)

· 응시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,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시

□ 부정행위 발생 시 처분

-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 관련 처분 후,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 처분

특히,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'해당 학기 전과목 낙제' 및 학생상벌위원회 회부

※ 성적 관련 처분: 해당 과목 낙제, 당일 과목 전체 낙제, 해당 학기 전 과목 낙제

징계 처분: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퇴학 등

- 징계 처분 시 졸업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

□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

① 감독자가 학생 부정행위 사실 인지
② 과목 개설 대학에서 해당 학생 및 감독자 등에게 사실 조사 후 부정행위 내용 특정
③ 과목 개설 대학에서 해당 학생 소속 대학에 처분 요청
④ 해당 학생 소속 학과(부) 또는 단과대학 심의를 통해 소속 대학장이 처분
⑤ 교무처장에게 통고
⑥ 해당 학생 소속 대학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,
소속 대학에서 해당 캠퍼스 학생지원팀에 학생상벌위원회 개최 요청

특히, AI 및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'해당 학기 전과목 낙제' 및 학생상벌위원회 회부 예정

다시 한번 **금번 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처분함을 강조**하는바,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.